

## <별지> 세부계약조건

- 1. 투자일임 대상 계좌
  - 가. 증권사 :
  - 나. 계좌번호 :
  - 다. 계좌명 :
- 2. 고객에 대한 통지
  - 가. 통지방법 : 전자우편
  - 나. 전자우편주소 :
- 3. 일임상품명 (계약명) : 국내채권 투자일임
- 4. 투자대상
  - 가.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(ETF), 주식, 채권 : 0~100%
  - 나. RP, 예수금 등 현금성 자산 : 0~100%
- 5.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
  - 가. 계약체결 이후 대상 계좌에 최소운용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운용을 시작합니다.
  - 나.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, 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.
- 6. 투자일임재산 : 투자일임 대상 계좌에 고객이 입출금한 금액의 합계
  - 가. 최소운용금액 : 5천원
  - 나. 계약갱신 시의 초기 투자일임원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투자일임재산 평가금액에서 성과수수료와 기본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- 7. 투자일임수수료 :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하며,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합니다.

기본수수료	기본수수료율: 연 0.2% (연 4회 분기말 0.05% 후취)
성과수수료	연 5% 초과수익의 10% 후취 (하이워터마크 적용)

중도해지 수수료	해당사항 없음
납부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기본수수료) (매분기별) 후취 : 3, 6, 9, 12월 말 종료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</li> <li>• (성과수수료) 계약 체결일 기준 매 1년 단위, 또는 계약해지일</li> </ul>
납부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객의 [추심이체 출금 동의]에 의하여 회사가 정산하여 수령합니다. (10. 기타 특약사항 참조)</li> <li>•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되며,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[추심이체 출금 동의]에 의한 수수료 자동이체가 불가능하거나 고객의 계좌에 재산이 부족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, 회사는 고객에게 현금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• 수수료 지급일에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익영업일에 징수합니다.</li> </ul>

- 가. 기본수수료 : 투자원금을 기준으로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
- 나. 성과수수료 :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금액(이하 초과수익금)을 기준으로 성과수수료율 적용하여 징수하는 수수료
  - 초과수익금이 부(負, 음수)일 경우 성과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
  - 성과수수료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매 1년단위로 산정합니다. 다만 산정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 산정 기준일이 됩니다.
  - 계약기간 내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가 완료된 시점 성과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- 다.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.
- 라.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사례는 [별첨]을 참조해주세요.

● 8. 투자일임재산의 출금 및 해지

- 가. 계약해지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출금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모바일앱 등을 통해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단, 전자금융거래 장애 시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출금 가능금액 및 가능일
  - 일부 출금 신청 : 최소유지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출금 신청 가능
    - 최소유지금액 = 평가금액 - 최소운용금액
  - 전액 출금 신청 : 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신청 후 출금 가능
  - 출금가능일 : 출금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후 (계약해지 또는 투자중지 시에는 수수료정산 후 출금 가능)
- 다. 투자일임재산의 시장 처분 불가 또는 증권시장 등의 폐쇄·정지·휴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요청한 계약해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
● 9. 투자운용전문인력

성명 / 직책	학력 및 주요경력	주요자격
문희관	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22.07~현재: 업라이즈투자자문 운용역 17.02~22.04: 삼성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	투자자산운용사

- ※ 상기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거래, 시세조종,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,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

● 10. 기타 특약사항

- 가. 추심이체 출금 동의 관련 안내
  - 투자일임수수료는 고객의 '추심이체의 출금 동의'에 근거하여 회사가 직접 징수합니다.

- 고객의 [추심이체 출금 동의]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서 계약기간 중 고객이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 종료 시 회사는 고객의 '추심이체 출금 동의'를 철회 처리합니다.
- 나. 고객이 대상 계좌의 업라이즈투자자문에 대한 주문대리인 등록을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다. 계약서 제24조제2항의 연체이자는 9.9%로 합니다.

## [별첨] 투자일임수수료 계산 방법

- 1. 기본수수료 산정 방법

- 가. 계산식 : [운용기간 투자일임재산의 평균] \* 기본수수료율 \*  
[운용기간]/365

- 나. 계산사례

- 운용 상황 예시

- 최초 투자원금 1,000만원으로 30일 운용
- 500만원 추가 입금하여 투자원금 1,500만원으로 20일 운용
- 300만원 중도 출금하여 투자원금 1,200만원으로 10일 운용

- 기본수수료 계산

- 조건 : 기본수수료율 연 0.2%, 운용기간 60일
- 운용기간 투자원금의 평균  
 $(1,000 * 30 + 1,500 * 20 + 1,200 * 10) / 60 = 1,200$ 만원
- 산정 기본수수료 :  $1,200 * 0.2\% * 60 / 365 = 3,945$ 원

- 2. 성과수수료 산정 방법

- 가. 계산식 : 기준수익률 초과하는 수익금액(이하 초과수익금) \*  
성과수수료율

- 나. 계산 사례 1

- (계약일 1년후) 운용 상황 예시

- 투자원금 1,000만원,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1,100만원이 된 경우

- (계약일 1년후) 성과수수료 계산

- 조건 : 기준수익률 5%, 성과수수료율 10%
- 초과수익금 : 1,100만원 - 1,050만원 (기준수익률 5%) = 50만원
- 산정 성과수수료 : 50만원 x 10% = 5만원

- (계약일 2년후) 운용 상황 예시

- 투자원금은 하이워터마크 적용으로 최초 투자원금 1,000만원 아닌 1년 후 (이익) 정산 당시 평가금액인 1,100만원
- 투자원금 1,100만원,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1,200만원이 된 경우
- (계약일 2년후) 성과수수료 계산
  - 조건 : 기준수익률 5%, 성과수수료율 10%
  - 초과수익금 : 1,200만원 - 1,155만원 (기준수익률 5%) = 45만원
  - 산정 성과수수료 : 45만원 x 10% = 4.5만원

○ 다. 계산 사례 2

- (계약일 1년후) 운용 상황 예시
  - 투자원금 1,000만원,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990만원이 된 경우
- (계약일 1년후) 성과수수료 계산
  - 조건 : 기준수익률 5%, 성과수수료율 10%
  - 초과수익금 : 990만원 - 1,050만원 (기준수익률 5%) = -60만원
  - 산정 성과수수료 : 초과수익금이 부(負, 음수)이므로 성과수수료 없음
- (계약일 2년후) 운용 상황 예시
  - 투자원금은 하이워터마크 적용으로 1년 후 (손실) 정산 당시 평가금액인 990만원이 아닌 최초 투자원금 1,000만원
  - 투자원금 1,000만원, 운용 후 산정 기준일 평가금액이 1,070만원이 된 경우
- (계약일 2년후) 성과수수료 계산
  - 조건 : 기준수익률 5%, 성과수수료율 10%
  - 초과수익금 : 1,070만원 - 1,050만원(기준수익률5%) = 20만원
  - 산정 성과수수료 : 20만원 X 10% = 2만원